2019. 9. 26. 10:00
제27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9월 6일

2. 제 출 자 : 서도원 의원

3.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2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2012. 4. 12, 제14차 상임위원회)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4조~제5조에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
- 안 제6조에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 안 제9조~제12조에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 임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군민"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군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협력)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수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할 경우, 여성 위원이 위촉직 위원 정수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4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달성군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주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2012. 4. 12, 제14차 상임위원회)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서는 현행 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에 비추어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시 현행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9월 6일

2. 제 출 자 : 서도원 의원

3. 제안사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제6조)
비용 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8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5조~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안 제8조~제9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안 제12조에 위원회 운영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 조례안 1부. 끝.

붙 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을 대리·동행자로서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함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과「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군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군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군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군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군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신장에 관련된 군의 정책 자문에 응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9월 6일

2. 제 출 자 : 하중환 의원

3. 제안사유

○ 달성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이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군수 책무, 사업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사업조건, 영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달성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이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3조~제4조에 군수 책무 및 사업대상
- 안 제5조~제6조에 사업조건 및 영업자의 책무
- 안 제7조에 지원의 제한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 조례안 1부. 끝.

붙 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이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입식 테이블 설치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입식테이블“ 이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제3조(군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하도록 식품접객업 환경개선사업과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재정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규 일반음식점 또는 모범업소 지정 시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고하여 식품접객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일반음식점으로서 이동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로 한다.

제5조(사업 조건) 군수는 입식테이블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설치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상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1년 중「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포함)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9월 6일

2. 제 출 자 : 하중환 의원

3. 제안사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4. 주요내용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발달장애인 위원회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복지시설의 확충, 사무의 위탁 및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발달장애인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5. 관계법령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제4조에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군민의 책무
- 안 제6조~제7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 안 제10조에 발달장애인 위원회에 대한 자문
- 안 제14조~제15조에 발달장애인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 조례안 1부. 끝.

붙 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사항
4.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사업

가.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나.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다.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라.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 사업

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가.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 사업

나.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다.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라.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

마.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바.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가.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 사업
나.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다. 법 제32조에 따른 휴식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에 대한 자문)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시장과 협의하여 달성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립·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사업의 보조)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홍보)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9월 6일

2. 제 출 자 : 김정태 의원

3. 제안사유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를 칭찬함으로써 더욱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 미래 지역사회의 성실한 군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주요내용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표창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시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5. 관계법령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안

붙　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안

제1조(목적)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와 관계단체의 협력)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 및 관계단체는 상호 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라 추천받은 어린이에 대한 표창대상자로서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
2. 표창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 칭찬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달성군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및 정책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관련 전문가
3. 초등학교장
4.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달성군의 담당 업무 부서장 또는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린이 표창대상자 추천서

<table>
<tr><td>표창부문</td><td colspan="4"></td><td rowspan="3">사 진
3×4㎝</td></tr>
<tr><td rowspan="2">성 명</td><td>한 글</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한 자</td><td></td><td>성 별</td><td></td></tr>
<tr><td>보호자
성 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d>휴대전화</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학교명</td><td></td><td>학년</td><td></td><td>반</td><td></td></tr>
<tr><td colspan="6">위의 어린이를 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표창 대상자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td></tr>
</table>

[별표 2]

공 적 조 서

(1) 성 명			
(2) 생년월일 (성별)		(3) 보호자 성명(생년월일)	
(4) 주 소			
(5) 학교명		(6) 학년 및 반	
(7) 공적요지 (50자 내외)		(8) 공적분야코드	
(9) 추 천 훈 격		(10)추천순위	
조 사 자			
(11) 소 속		(12) 직 위	
(13) 직 급		(14)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5) 년 월 일	(16) 경 력	(17) 년 월 일	(18)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재)			
(19) 년 월 일	(20) 내 용	(21) 년 월 일	(22) 내 용
(23) 공 적 사 항			

[별표 3]

공 적 요 약 서

연번	학교명	학년 /반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성별	추천 훈격	공적개요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9월 6일

2. 제 출 자 : 이대곤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군수 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평가대상·시기·실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 안 제3조~제4조에 군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
- 안 제5조~제7조에 평가대상·시기·실시 등
- 안 제8조에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 조례안 1부. 끝.

붙 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며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4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
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9월 6일

2. 제 출 자 : 이대곤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요양원의 기능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입소 대상·절차·비용 및 퇴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수탁자의 선정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10조)

5. 관계법령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운영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명칭과 위치
- 안 제3조~제4조에 요양원의 기능 및 운영관리
- 안 제6조~제7조에 입소 대상 · 절차 · 비용 및 퇴소
- 안 제8조~제10조에 수탁자의 선정 및 수탁자의 의무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 임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따로 고시한다.

제3조(기능) 요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의료복지 증진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과 지도
3.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4조(운영관리) ①군수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를 둔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설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6조(입소 대상 · 절차 · 비용 등) 요양원의 입소 대상 · 절차 · 비용 등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퇴소) ①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입소한 경우
3.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퇴소 할 경우 입소비용을 면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 ①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자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9조(운영비) 시설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 자부담경비와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요양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조금, 시설이용 등의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수탁자가 동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권을 하부기관에 양도·대여 또는 재 위탁 할 수 없다.

⑦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기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장비·비품 및 집기 등은 군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2조(기구 및 인력)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①수탁자는 수탁재산,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 또는 멸실의 경우 또한 같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연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 · 군 · 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 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 · 군 · 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9월 6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우리 군 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코자 함.

4.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지원절차, 관리·운영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관리·운영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관계법령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우리 군 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코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3조~제4조에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지원기준 등
- 안 제5조~제6조에 지원 절차, 관리·운영자의 지정 등
- 안 제7조에 관리·운영비용의 부담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 임1)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달성군 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별표3]에 따른 각 리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를 제외한 리를 말한다.
3. "관리·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
2. 재해·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
4. 그 밖에 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4조(지원기준 등)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회(해당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의 성격을 갖는 한 주민총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한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신규 또는 교체 설치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회의 비용 등으로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
3. 달성군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파손된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 회의를 거쳐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제6조(관리·운영자의 지정 등) ① 관할 읍·면장은 해당 마을 이장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한다.

② 해당 마을 이장에게 관리·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은 마을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마을 주민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마을 주민에게 관리·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운영비용의 부담)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영비용은 해당 마을회가 부담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9월 6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4. 주요내용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예산·결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및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5. 관계법령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4조~제5조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계획수립·지원 및 신청 등
- 안 제8조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 안 제13조에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 조례안 1부. 끝.

붙 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 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 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평등권을 보장 받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 란「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5. "자립생활체험홈" 이란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이 그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형태를 갖춘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자립생활가정" 이란 시설퇴소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관련기관이 제5조 각 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계획수립) 군수는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 중증장애인 사례 관리
3. 중증장애동료 간 상담을 포함한 상담지원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5.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지원
6.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
7.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
8.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활동에 대한 지원
9.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10.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인권침해 예방 활동 지원
11. 그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6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등) ① 중증장애인 및 그 보호자는 군수에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업무 담당공무원은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직권으로 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지원대상)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 받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의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처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공 받은 센터는 관계 법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센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는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1.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 되었을 때
2.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였을 때
4. 관계 법령이나 명령, 행정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재무회계관리 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며 그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은 군수가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자립생활 체험홈 등 운영) 군수는 재가 장애인 및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 가정을 운영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9월 6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달성군내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명칭,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야외무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야외무대의 사용허가,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관계법령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달성군내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명칭, 위치
- 안 제3조에 야외무대의 관리 운영
- 안 제4조~제5조에 야외무대의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 안 제7조에 사용자의 책임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안"**의 검토 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 임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 예술 진흥을 위한 달성군내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달성군 내 야외무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문진 야외무대 : 사문진 선착장(화원읍 성산리 소재) 일원에 설치한 무대를 말한다.
2. 현풍도깨비시장 야외무대 : 현풍백년도깨비시장 공연장(현풍읍 비슬로 132길 21-1)에 설치한 무대를 말한다.
3. 그 외에 송해공원 주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광장 등 공연가능한 장소를 포함한다.

제3조(관리 · 운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외무대가 문화 · 예술 공연 등 공익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야외무대의 운영시간은 09:00- 21:00까지이며, 하절기(6- 8월)에는 09:00- 22:00까지로 하며, 각종 문화 · 예술행사 및 길거리 생활예술공연(버스킹) 등을 위한 야외무대 사용신청시 1회당 사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운영시간 및 사용시간을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야외무대 사용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신청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 ·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허가 할 수 있다.

3. 사용허가 시 공연의 수준과 장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행위 등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과도한 소음이나 조명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야외무대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야외무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야외무대와 부대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는 민 · 형

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야외무대 사용 시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table>
<tr><td>접수번호</td><td colspan="4" rowspan="2">야외무대 사용 신청서</td></tr>
<tr><td></td></tr>
<tr><td>사용시설명</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단 체 명
(대 표 자)</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행 사 명
(사용목적)</td><td colspan="4"></td></tr>
<tr><td>사 용 일 시</td><td colspan="4">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행사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td></tr>
<tr><td>사용 시설명</td><td colspan="4">o 야외무대 o 기 타 ( )</td></tr>
<tr><td>행 사 개 요</td><td colspan="4">o 참여예정인원 및 대상 :
o 행사내용 :
o 행사주최/주관/후원 :
o 기타 참고사항 :</td></tr>
<tr><td>시설물사용시 준 수 사 항</td><td colspan="4">o 무대 못질 등 훼손, 변형사용 절대금지 o 행사장 질서유지
o 전기시설 사용시 시건장치 및 사고주의 o 행사 후 주변정리 및 청소
o 스탠드 나무의자 파손 주의 o 야간(21:00이후) 폭죽사용 금지</td></tr>
<tr><td colspan="5">위 시설물의 사용시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물파손, 각종사고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본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사용 신청 합니다.
o 행사계획서 : 별도 붙임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달 성 군 수 귀하</td></tr>
</table>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9월 6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성군민의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접종비용 지원 및 위탁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위탁의료기관 비용 상환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5. 관계법령

관계법령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성군민의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대상
- 안 제4조~제5조에 접종비용 지원 및 위탁의료기관 선정
- 안 제7조~제8조에 위탁의료기관 비용 상환 및 환수조치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 임1)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종류 및 대상) 선택예방접종의 접종종류 및 접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 생후 8개월 미만 영아 (신청일 기준 보호자가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상포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일 기준으로 달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접종횟수) 선택예방접종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 : 2회 내지 3회
2. 대상포진 : 1회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접종비용 지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사업의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군수는 달성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접종방법 등) 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에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과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③ 선택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후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자에 대하여 보건소에 비용상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에서는 피접종자에 대하여 비용지급심사를 거쳐 상환결정을 한 후 비용을 상환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무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의약품부작용피해 구제제도」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 · 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 출산 ·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 출산 ·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 · 출산 ·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 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 · 요양 제도 등을 확립 ·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9월 6일

2. 제 출 자 : 도일용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영유아의 급·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에게 보다 균형 잡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 신설
(안 제34조제1항제8호)

'군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제1항제8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안 제34조제3항)

5. 관계법령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영유아의 급·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에게 보다 균형 잡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34조제1항제8호에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 신설
- 안 제34조제3항에 '군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제1항제8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 임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여,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및 건강을 위한 비용
8.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제1항제8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비용의 보조) ① (생략) 1 ~ 6 (생략) 7. 영유아의 안전·위생을 위한 비용 및 영양 등 건강을 위한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생략)	제34조(비용의 보조)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및 건강을 위한 비용 8. 영유아 급 · 간식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 9.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제1항 제8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 · 개축 및 개수 · 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 · 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9월 6일

2. 제 출 자 : 도일용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노후 공동주택의 각종 시설물의 잦은 고장과 안전관리 등 보수비용 지원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승인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추가로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일부 조례를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기준 추가(안 제19조제2항 신설)

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 조례를 조항에 맞게 개정

5. 관계법령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22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사용승인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추가로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일부 조례를 조항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9조제2항에 '공동주택단지 중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 조례안 1부. 끝.

붙 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제15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제16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 중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보조금의 지원) ① (생략)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제17조(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제18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18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지원기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단지별 세대수를 고려하여 최대 소요 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 설〉	제19조(보조금 지원기준)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단지별 세대수를 고려하여 최대 소요 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 중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군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군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9월 6일

2. 제 출 자 : 도일용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現 조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성군에 되어있는 학생이라도 교복을 입는 달성군 관외지역 소재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성군에 되어 있는 학생이면, 다니는 학교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모두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

4. 주요내용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에서 학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으로 변경(안 제3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만 제출토록 한 것을 해당 학교의 장 및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토록 변경(안 제5조)

교복구입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토록 한 것을 해당 학교의 장 및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토록 변경(안 제5조)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추가(안 제5조)

조례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부칙)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現 조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성군에 되어 있는 학생이라도 달성군 관외 지역 소재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성군에 되어 있는 학생이면, 다니는 학교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모두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3조에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으로 변경.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 임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를 “교복을 입는 학교에”로 한다.

제5조 1항 중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관할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의 장은”을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면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교복구입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관할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면장은 ----------.

현 행	개 정 안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교복구입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③ ----------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 신청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 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은 금 액	원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또는 읍·면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별지 제2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 중·고등학교 또는 ○○ 읍·면)

연번	신청 학생 인적사항				지원 적합 여부	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		비고
	학년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일부 지원	수혜 없음	
					적 합 부적합	금액 기재		

작성자 : ○○ 중・고등학교 또는 ○○ 읍·면 ○○○ (인)

확인자 : ○○ 중・고등학교장 또는 ○○ 읍·면장 ○○○ (인)

달성군수 귀하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 · 개축 및 개수 · 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 · 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9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시설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여성문화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의 감면)에 의거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확대 조정(별표 3 신설)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단체감면 규정 신설

안 별표 1

-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조정(월60,000원 → 월100,000원)
- 사물함 이용요금 조정(3,000원 → 5,000원)
- 시설사용료 조정 및 추가

5. 관계법령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6. 기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 2019. 8. 14. ~ 9. 30.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여성문화복지센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대상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가족,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시설의 이용요금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2조 제3항은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을 별표3 신설을 통해 명료화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등, 상위규정의 취지에 맞게 조정.
- 제5항을 신설하여 수영장 단체 이용자에 대한 단체감면 규정을 조정.
- 안 별표1은 수준 높은 강사 초빙과 강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강좌에 한해 수강료 상한액을 조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지역여건에 맞는 사물함 이용요금 및 부속시설사용료를 조정하여 인근 지역의 시설과 균형을 맞추어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함.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　임1)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3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 를 “제11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별표3의 구분에 따라” 로 한다.

제1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영장 1일 입장 이용 시 동일 단체 소속 30명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단체감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3항의 “1호” 부터 “10호” 까지 삭제한다.

“별표 1” 과 “별표 3” 을 각각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단위 : 원)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일 입장 요금			비고
수영장	이용요금(월)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부가가치세금액(10%) 포함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이용요금(월)	50,000														
사물함	이용요금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5,000원**														
체형분석	이용요금	1회 5,500원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 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2)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이용료	비고
문화강좌 이용료	**100,000원 이하**	·주1회 한달 기준
기타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별도로 정함.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교재 및 재료비 별도	

3) 시설사용료

가. 대관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강 당	오 전	30,000	
	오 후	50,000	
	야 간	70,000	
회의실 및 강의실	1회(2시간)	10,000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5)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설 비 명		기준	사용료	비고
피아노		1회	30,000	
무대조명		1회	25,000	
음향	빔프로젝트	1회	20,000	
	유선마이크	1회	개당 5,000	
	무선마이크	1회	개당 10,000	
	CD 플레이어	1회	10,000	
무대시설	보면대	1회	10,000	
	의자	1회	10,000	
냉·난방		1회	80,000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연습을 위한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피아노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3) 소모품(건전지, CD, DVD, 테이프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4) 보면대 및 의자는 10개 이상 사용 시 부과함.

【별표 3】

사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율(할인율)	비 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 소지자(의상자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이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 10. (생략)

④ (생략)

<신설>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단위:원)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 로빅	1일 입장 요금	비고
수영장	이용요금	생략					
헬스장	이용요금	생략					
사물함	이용요금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000원					
체형분석	이용요금	생략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③--- 제11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별표3의 구분에 따라----------

1. ~ 10.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 수영장 1일 입장 이용 시 동일 단체 소속 30명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단체감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단위:원)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 로빅	1일 입장 요금	비고
수영장	이용요금	(현행과 같음)					
헬스장	이용요금	(현행과 같음)					
사물함	이용요금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5,000원**					
체형분석	이용요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2)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이용료	비고
문화강좌 이용료	60,000원 이하	·주1회 한달 기준
기타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별도로 정함.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교재 및 재료비 별도	

3) 시설사용료(대관시설)

가. 대 관 료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강당		오전	30,000	
		오후	50,000	
		야간	70,000	
회의실 및 강의실		1회(2시간)	10,000	
부속 설비	피아노	1회	3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조명	1회	25,000	
	냉·난방기	1회	80,000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5)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개 정 안

2)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이용료	비고
문화강좌 이용료	**100,000원 이하**	(현행과 같음)
기타	(현행과 같음)	

3) 시설사용료(대관시설)

가. 대 관 료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강당	오전	30,000	
	오후	50,000	
	야간	70,000	
회의실 및 강의실	1회(2시간)	10,000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5)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나. 부속시설 사용료

섬비명		기준	사용료	비고
피아노		1회	30,000	
무대조명		1회	25,000	
음향	빔프로젝트	1회	20,000	
	유선마이크	**1회**	**개당 5,000**	
	무선마이크	**1회**	**개당 10,000**	
	CD플레이어	**1회**	**10,000**	
무대 시설	**보면대**	**1회**	**10,000**	
	의자	**1회**	**10,000**	
냉·난방기		1회	80,000	

※주 1) 오전,오후,야간을 각1회로 본다.
2) 연습을 위한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피아노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3) 소모품(건전지, CD, DVD, 테이프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4) 보면대 및 의자는 10개 이상 사용 시 부과함.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신 설	사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 소지자 (의상자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이내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0] <개정 2009.8.1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5. 의상자증 소지자(의상자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9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된 부분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우선시 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2조 제6항의 "5천원"을 "1만원"으로 개정함.

제9조 1항의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조례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보다 우선시하여 위법한 제9조 제2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과「농어촌도로 정비법」의 해당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를 삭제함.

5. 관계법령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질서행위규제법 제5조

6. 기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 2019. 8. 8. ~ 8. 28.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된 부분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우선시 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제2조 제6항의 “5천원”을 “1만원으로 개정
- 제9조 제1항의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의 해당규정에 따른다”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개정
- 제9조 제2항을 삭제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 임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 중 “5천원”을 “1만원”으로 한다.

제9조(준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도로법」과「농어촌도로 정비법」의 해당규정을 따른다”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2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도로법」과「농어촌도로 정비법」의 해당 규정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 · 징수) ① ~ ⑤ (생 략) ⑥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 ⑧ (생략)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 · 징수) ① ~ ⑤ (생 략) ⑥----------1만원----------.
제9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가산금의 부과 · 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제9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가산금의 부과 · 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의 해당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삭제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 · 징수 및 반환)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질서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9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달성문화센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대상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가족,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시설의 이용요금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달성문화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의 감면)에 의거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확대 조정(별표 3 신설)

안 별표 1

- 사물함 이용요금 조정(3,000원 - 시설사용료 조정 및 추가

5. 관계법령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6. 기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 2019. 8. 14. ~ 9. 30.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조문의 미비점 및 시설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달성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2조 제3항에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을, 별표3 신설을 통해 명료화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등, 상위규정의 취지에 맞게 조정

- 안 별표1은 지역여건에 맞는 사물함 이용요금 조정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 임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3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를 “제11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로 한다.

제12조제3항의 “1호” 부터 “10호” 까지 삭제한다.

“별표 1” 과 “별표 3” 을 각각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단위 : 원)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일 입장 요금			비고
수영장	이용요금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 초등	부가가치세액 (10%) 포함 * 동일단체 소속 1일 입장 할인율 -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이용요금	50,000														
사물함	이용요금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5,000원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달성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 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2) 시설사용료(대관시설)

가. 대 관 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장(백년홀)	오 전	30,000	
	오 후	50,000	
	야 간	70,000	
회의실	오 전	30,000	
	오 후	30,000	
	야 간	50,000	
전시실(백년갤러리)	1일	30,000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5)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심야시간(22:00 ~ 익일08:00)의 시설사용은 "야간 요금에 50%를 가산한 금액" 을 적용함(3,4,5항 적용하지 않음)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설 비 명		기준	사용료	비고
피아노		1회	30,000	
무대조명		1회	25,000	
음향	유선마이크	1회	개당 5,000	
	무선마이크	1회	개당 1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CD 플레이어	1회	10,000	
무대시설	보면대	1회	10,000	
	의자	1회	10,000	
냉·난방	공연장	1회	80,000	
	전시실	1일	30,000	
	회의실	1회	40,000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연습을 위한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피아노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3) 소모품(건전지, CD, DVD, 테이프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4) 보면대 및 의자는 10개 이상 사용 시 부과함.

【별표 3】

사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 소지자 (의상자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이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 10. (생략)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단위:원)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 로빅	1일 입장 요금	비고
수영장	이용요금	생략					
헬스장	이용요금	생략					
사물함	이용요금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000원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달성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2) 시설사용료(대관시설)

가. 대 관 료

생 략

나. 부속시설 사용료

생 략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③--- 제11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별표3의 구분에 따라----------

1. ~ 10. **삭제**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단위:원)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 로빅	1일 입장 요금	비고
수영장	이용요금	(현행과 같음)					
헬스장	이용요금	(현행과 같음)					
사물함	이용요금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5,000원**					

(현행과 같음)

2) 시설사용료(대관시설)

가. 대 관 료

(현행과 같음)

나. 부속시설 사용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신 설	사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 소지자 (의상자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이내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0] <개정 2009.8.1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라.「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 가족증 소지자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5. 의상자증 소지자(의상자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9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건소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지역주민의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2조)

업무대행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총 10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5조)

군수는 절차에 따라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안 제6조)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7조)

5. 관계법령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6. 기타사항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 2019. 8. 12. ~ 9. 1.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비용추계서 : 붙 임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보건복지부의 광역시 소재 郡 인구 2만 이상 지역 공중보건의사 배치 제외 지침에 따라 진료 공백으로 인한 민원 불편 야기 및 전문의 부재로 진료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 중 진료사업을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건소 진료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2조에 지역주민의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5조에 업무대행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총 10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6조에 군수는 절차에 따라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안 제7조에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
- 안 제9조에는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업무수행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 임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에 관한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대행업무를 대행할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에서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3.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제5조(업무대행계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자의 업무수행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총 계약기간 10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업무대행계약의 해지) ① 업무대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만료일 60일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나 정신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관계 법령 및 조례·시행규칙 또는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1. 대행업무를 수행할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의료인이 확보된 경우
2.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의 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업무대행비의 지급)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무의 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 ① 업무대행자는 제2조에 따른 대행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1. ~ 4. (생략)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 마. (생략)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②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 · 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 · 해산부(解産婦) · 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별 지】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7조(업무대행비의 지급)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무의 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 결과

○ 추계 기간 : 2020년 ~ 2029년까지 10년간

○ 추계 대상

- 보건소 진료실 진료의사(전문의-내과 등) 1인 8,500천원/월
- 보건소 예방접종실 예진의사(전문의-소아청소년과 등) 1인 8,500천원/월

○ 추계 비용 (2013년~2018년 평균 물가상승률 1.5% 반영)

- 2020년 2명 x 102,000천원 = 204,000천원
- 2021년 2명 x 103,530천원 = 207,060천원
- 2022년 2명 x 105,083천원 = 210,166천원
- 2023년 2명 x 106,660천원 = 213,320천원
- 2024년 2명 x 108,260천원 = 216,520천원
- 2025년 2명 x 109,884천원 = 219,768천원
- 2026년 2명 x 111,533천원 = 223,066천원
- 2027년 2명 x 113,206천원 = 226,412천원
- 2028년 2명 x 114,905천원 = 229,810천원
- 2029년 2명 x 116,629천원 = 233,258천원

☞ 총 2,183,380천원

○ 재원 조달 방안 : 군비 100%

3.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4. 작성자 : 보건소장 박미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6차년도 (2025)	7차년도 (2026)	8차년도 (2027)	9차년도 (2028)	10차년도 (2029)	계
세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세출		204,000	207,060	210,166	213,320	216,520	219,768	223,066	226,412	229,810	233258	2,183,380
업무 대행비 지급		204,000	207,060	210,166	213,320	216,520	219,768	223,066	226,412	229,810	233,258	2,183,380
재원 조달		204,000	207,060	210,166	213,320	216,520	219,768	223,066	226,412	229,810	233258	2,183,380
의존재원	소계											
자체수입	소계	204,000	207,060	210,166	213,320	216,520	219,768	223,066	226,412	229,810	233,258	2,183,380
	지방세	204,000	207,060	210,166	213,320	216,520	219,768	223,066	226,412	229,810	233,258	2,183,380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 회계												
기타 (채무 부담, 민자 등)												